

경운대학교 학생진로상담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운대학교 학생진로상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부서) ① 우리대학에서 운영하는 진로·심리상담 지원과 관련하여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진로지원의 주관부서는 커리어개발지원센터로 한다.
 - 가. 진로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 진단 및 컨설팅
 - 나.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총괄
 - 다.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결과 분석 및 개선
 - 라.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2. 심리상담지원의 주관부서는 학생생활상담센터로 한다.
 - 가.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 진단 및 컨설팅
 - 나. 각종 심리검사, 개인 및 집단상담 운영, 상담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총괄
 - 다.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결과 분석 및 개선
 - 라.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제3조(운영부서) 우리대학의 진로·심리상담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처
2. 학생생활상담센터
3. 커리어개발지원센터
4. 장애학생지원센터
5. 교수학습지원센터
6. 취업지원센터
7. 인터내셔널센터

제4조(조직)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생생활상담센터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3. 위원은 커리어개발지원센터장과 진로·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9인 내외의 전임교원으로 구성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로·심리상담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2. 진로·심리상담지원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상담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 진로·심리상담지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상담 전문기관의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회의를 실시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임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환류) ① 위원회는 각 운영부서로부터 보고받은 진로·심리상담에 관한 자체운영성과를 검토 및 평가한다.

② 위원회는 자체운영성과를 심의하여 차기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내용에 반영할 개선안을 도출한다.

③ 개선안을 반영하여 차기 프로그램을 계획 및 편성하고 비교과과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위원회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처에서 관장한다.

제10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학생상담위원회 규정은 학생진로상담위원회 규정으로 대체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